【 8 】 양주시 안전관리위원 운영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5. 9.
제 출 자 : 양 주 시 장

1.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위원회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양주시 조례 제 호

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정책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심의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1.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부시장)
2. 시를 관할하는 교육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3. 시 관할구역내 군 부대장
4. 시장을 제외한 시 관할구역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5. 시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단체의 장
6. 시의 자연·인적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국·과장 및 보건소장
7. 재난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 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연·인적재난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제3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시작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 및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은 기관·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①위원회의 간사는 각 회의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 장소
2. 출석위원 및 관계인
3. 안건명
4. 참석자 발언 요지
5. 심의결과
6. 기타 특기사항 등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o 제11조(지역위원회)①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소속하에 시.도 안전관리위원회를,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시.군.구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시·도위원회 및 시·군·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경기도 준칙안

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준칙(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부시장·부군수)
2. 시·군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과장) 및 관할소방서장
3. 시·군 관할경찰서장
4. 시·군 지역 관할군부대장(관할군부대가 없을 경우 인근 시·군 지역 관할군부대장)
5. 시·군 교육장
6. 시·군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제외한다)
7. 시·군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

하는 자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계장(국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과장)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

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상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

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